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26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 정의규정에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로 대상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 개정안 정의의 설명과 정책의 대상이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발달지연 영유아’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제5항).
-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의료지원 등 복

지서비스 연계 및 교육·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8조제3호 및 제4호).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한다.

안 제8조제4호 중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장애위험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을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장애위험 영유아</u>”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동일></p> <p>1. ~ 4. <개정안과 동일></p> <p>5. “<u>발달지연 영유아</u>”----- ----- ----- ----- ----- -.</p>
<p>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신설></p>	<p>제8조(지원사업)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위험 영유아</u>에</p>	<p>제8조(지원사업) <개정안과 동일></p> <p>1.·2. <개정안과 동일></p> <p>3. <u>발달지연 영유아</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p> <p>4. (생략)</p> <p>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p> <p>제10조(중복지원 제한) <u>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u></p> <p>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p>	<p>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p> <p>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장애위험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p> <p>-----</p> <p>-----</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p> <p>제10조(중복지원 제한) <u>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 영유아 등 ----- .</u></p> <p>제11조(협력체계 구축) -----</p> <p>-----</p>	<p>-----</p> <p>-----</p> <p>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p> <p>-----</p> <p>-----</p> <p>5. <개정안과 동일></p> <p>6. <개정안과 동일></p> <p>제10조(중복지원 제한) <개정안과 동일></p> <p>제11조(협력체계 구축) <개정안과 동일></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 ----- <u>위하여</u> <u>자치구</u>, ----- ----- -----.</p>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필요하다고”를 “시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제10조 중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를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로, “사람”을 “영유아 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자치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u></p>
<p>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u></p> <p><u><신설></u></p>	<p>제8조(지원사업)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u></p> <p>4. <u>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 <u>시장이 필요하다고</u></p>
<p>4. (생략)</p> <p>5. <u>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u></p>	

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

----- 영유아 등 -----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 위하여 자치구, -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원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